

의안번호	2203783
의 퇴 인	이원택의원
회 답 일	2024.6.27.
추계번호	24B1321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1조 (물사용부담금 부과 등)	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사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함(제2항) 1. 새만금호의 원수를 농·어업용수로 사용하는 자	의무규정
2	안 제33조 (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	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새만금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농업·어업·환경·해양·도시·문화 분야 전문가 등으로서 새만금사업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함(제5항)	의무규정
3	안 제38조 (회계의 세입과 세출)	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음(제1항) 3. 새만금사업지역의 국유재산 임대사용료, 매각대금 및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. 다만, 제54조 ¹⁾ 및 제55조 ²⁾ 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·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외함 6.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금. 다만,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·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외함	의무규정
4	안 제54조 (농·어업용지 조성)	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토지용도 중 농·어업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용도에 대하여는 제8조 ³⁾ , 제9조 ⁴⁾ , 제11조 ⁵⁾ , 제12조 ⁶⁾ , 제17조 ⁷⁾ , 제20조부터 제23조 ⁸⁾ 까지 및 제28조 ⁹⁾ 에서 정한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음. 이 경우 제6조 ¹⁰⁾ 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5	안 제55조 (농·어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)	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·방조제·새만금호 등 관리시설(이하 “농·어업기반시설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·어업기반시설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(이하 “한국농어촌공사”라 한다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농·어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		제2항에 따라 농·어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은 농·어업기반시설등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(제3항) 3. 그 밖에 농·어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6	안 제56조 (농·어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)	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<u>해양수산부장관</u> 은 새만금사업지역의 <u>농·어업기반시설</u> 등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입으로 조성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1.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<u>해양수산부장관</u> 이 관리하는 토지·건물 등의 임대료	
		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<u>해양수산부장관</u>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농·어업기반시설</u> 등의 유지관리재원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7	안 제57조 (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)	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<u>해양수산부장관</u> 은 <u>농·어업기반시설</u> 등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방조제와 그 주변 부지, <u>농·어업용지</u> 및 새만금호 일부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1) 제54조(농지조성 등에 대한 특례)

-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지용도 중 농업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용도에 대하여는 제8조, 제9조, 제11조, 제12조, 제17조,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8조에서 정한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농지 등의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) 제55조(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·사용 관련 조사 등)

-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점용·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의 관리 상황 및 점용·사용 실태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을 점용·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이나 관계 문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3) 제8조(사업시행자의 지정 등)

-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.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.
 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 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
 4.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
 5.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넘는 법인(이하 생략)

4) 제9조(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)

-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 및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용도별 개발기본계획(이하 “개발계획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개발계획의 개요
2. 사업시행자
3. 매립사업계획(단계별 사업계획을 포함한다)
4. 인구수용
5.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
6. 경관 및 공원·녹지계획
7. 도로, 상·하수도 등 기반시설설치계획
8. 환경보전계획
9.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
10. 재원조달계획
11. 개발지구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

Ⅱ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필요한 지역

1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(이하 생략)
- 5) 제11조(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)
-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(이하 “실시계획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이 경우 실시계획은 토지용도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립, 대지 조성 등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.
- 6) 제12조(사업의 시행)
-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「관광진흥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농어촌정비법」, 「도시개발법」,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,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,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,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환경정책기본법」, 「항만법」 등 관계 법률(이하 “관계법률등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.
- 7) 제17조(다른 법률에 따른 인·허가등의 의제)
-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·인가·신고·결정·지정·면허·협의·동의·해제 또는 심의 등(이하 “인·허가등”이라 한다)을 받은 것으로 보며, 새만금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관계법률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·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인·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.
1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 허가·신고(이하 생략)
- 8) 제20조(준공검사)
-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준공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세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.
- 제21조(공사완료의 공고)
- 새만금청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한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.
- 제22조(조성토지등의 공급)
-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원형지(이하 “조성토지등”이라 한다)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제23조(선수금)
-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.
- 9) 제28조(보고·검사 등)
- ① 새만금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새만금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·사업장,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- 10)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
- ①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(이하 “새만금청장”이라 한다)은 새만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사회적·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연 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33조(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	• 미대상: 법에서 정한 위원수(30명이내)를 이미 충족하고 있어, 기존 위원 구성을 조정하여 어업 관련 전문가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,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2	안 제31조(물사용부담금 부과 등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38조(회계의 세입과 세출)	
4	안 제54조(농·어업용지 조성)	
5	안 제55조(농·어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)	
6	안 제56조(농·어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)	
7	안 제57조(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)	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고,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,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및 세제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
- (재정지출비용: 안 제54조부터 안 제57조까지) 어업용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사업(안 제54조), 개발기본계획·개발실시계획 수립(안 제54조), 어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업무위탁(안 제55조·안 제56조) 및 수익사업(안 제57조)을 실시하는 경우 재정지출의 증가가 예상됨
 -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어업용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사업 계획, 새만금사업시행 계획, 어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재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, 어업용지에서 이뤄지는 수익사업의 종류 등이 불확정적이어서, 현시점에 합리적으로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다만, 참고로 법 제55조, 제56조제1항, 제56조제3항, 제5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[참고자료]에서 확인할 수 있음
- (재정수입비용: 안 제31조·안 제38조) 새만금호의 원수를 어업용수로 사용하는 자에게 물사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, 회계의 세입에서 새만

금사업지역의 국유재산내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·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 수익금, 새만금사업지역 내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·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 수익금을 제외함에 따라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됨

-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새만금호의 원수를 어업용수로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의 감면규모를 추산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어업용수 규모, 감면율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관한 정보가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또한 개정안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내 국유재산과 사업지역 내 토지 및 시설물 수익금을 회계 세입원에서 제외하는 경우 예상되는 수입금 감소규모는 예상되는 토지면적, 시설물 종류, 수입금 실적 등을 바탕으로 추산하여야 하나, 현재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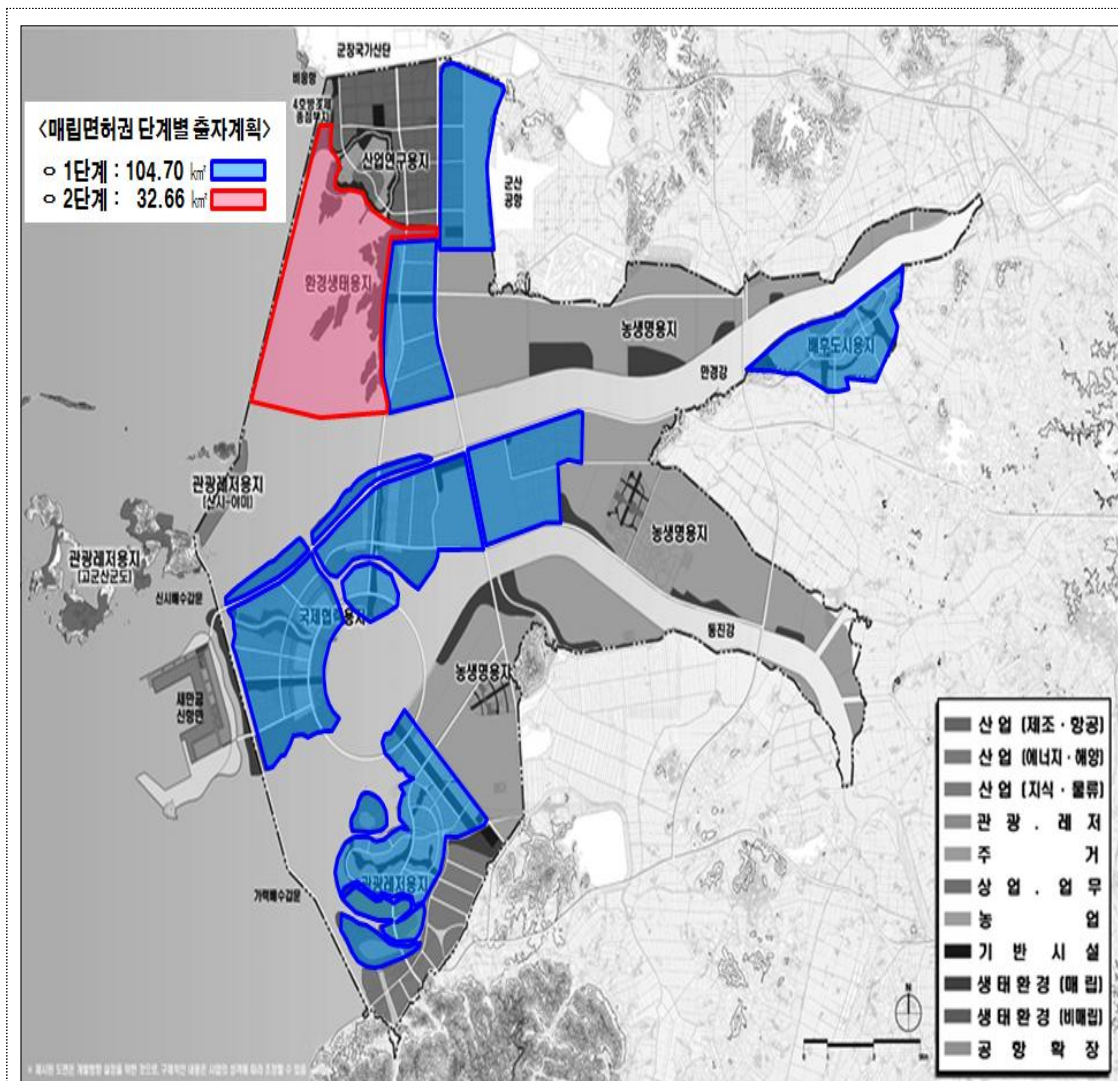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이유미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 1] 새만금 매립면허권 현물출자 현황

- 새만금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농식품부의 매립면허권(면적: 104.7km², 금액: 1조 970억원)을 새만금개발공사에 현물출자('18.11.)
 - 출자재원 :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104.7km²(1단계 면적)
 - * 매립면허권 137.36km² 중 1단계 104.7km², 2단계 32.66km²로 나누어 현물출자
 - 출자액 : 1조 970억원(10,478원/m²)
 - 출자일 : '18. 11. 22.(농식품부 매립면허 출자증명서 발급일)
 - 상환조건 : 출자일로부터 20년 이내 현금상환(미상환시 매립권 또는 조성토지)
 - 위 치 도



[참고자료 2] 동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사업 현황

1. 제55조(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의무) : 관리지역 현황

□ 새만금 토지용도 중 농업용지 등 직접 사업을 시행한 구역 및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추진

- (관리지역) 농생명용지 9,430ha, 잼버리부지 884ha, 환경생태용지 929ha, 방조제 등 기반시설부지 935ha

[새만금 토지이용계획('21.2. 새만금 기본계획)]

구 분	계	농 생 명	잼 버 리	산업·연구	국제협력	관광·레저	환경·생태	녹지대 등
면 적	29,100ha	9,430	884	4,170	5,200	2,796	4,200 (929)	2,420 (935)
소관부처	-	농식품부		새만금청, 농식품부				

- (기반시설) 방조제 33.9km, 배수갑문 2개소, 선착장 2개소, 방수제 59.6km, 승수로 37.7km, 연결도로 2.84km, 배수문 34개소, 교량 22개소, 홍보관 1개소
- (최근 3년간 예산) ('21) 170억원 → ('22) 240억원 → ('23) 240억원

2. 제56조제1항제1호(농어업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재원) : 임대료 등 수입(최근 3년)

□ 최근 3년('21~'23) 유지관리 적립금 수입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'21년	'22년	'23년
계	817	960	1,120
농생명용지 일시사용 임대료	82	370	523
토지, 건물 등 임대료	530	565	594
은행이자 발생분	205	25	3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

3. 제56조제3항(농어업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재원) : 위탁현황

- 위탁기관 : 한국농어촌공사
- 위탁사업 : 유지관리재원의 운용·관리에 관한 회계업무,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
- 위탁관련 재정지원 없음
 - 위탁기관에 위탁사업과 관련한 예산 또는 사업비를 별도 편성하거나 지원하고 있지 않음

4. 제57조(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) : 수익사업 현황 및 실적

- 새만금 방조제 자연카페 조성사업 현황
 - 위 치 : 새만금 33센터 인근 방조제 자연쉼터 부지 내
 - 사업량 : 건물 신축(3층, 333m²)
 - 사업비 : 20억원(재원 : 유지관리 적립금)
 - 사업기간 : '22. 10. ~ '23. 7.
 - 사업시행 : 한국농어촌공사(새만금사업단)
- 새만금 방조제 자연카페 임대현황
 - 임대물건 : 건물(3층, 333m²)
 - 임 차 인 : 이디야커피
 - 임대기간 : '23. 7. ~ '28. 6.(계약일로부터 5년간)
 - 임 대 료 : 매월 매출액의 8.5%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납부
 - 임대수익 : 670만원('23. 9월말 기준)